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2329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의자 : 허성무 · 박지원 · 이병진

이재관 · 윤준병 · 임오경

허종식 · 박해철 · 이강일

정일영 · 최혁진 · 김종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6(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 4. (생략)

② ~ ⑧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6(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설>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